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18	시 민			
결재일자	2024. 1. 16.	소방장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공개여부	부분공개(5)	최태호	박경서	윤득수	01/16 황기석
방침번호		협 조			



- 소방공무원 등 안전한 직무환경 조성 · 심신 안정 ·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
2024년 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



2024.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1.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2. 약자와의 동행				
목 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I	관련근거	4
II	추진방향	4
III	추진개요	5
IV	2024 예산현황	6
V	2023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7
VI	분야별 세부계획	8
	①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8
	② 후생복지 지원	16
	③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24
	④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지원	28
	⑤ 중대재해예방	32
VII	2024 추진일정	40

- 소방공무원 등 안전한 직무환경 조성·심신 안정·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

2024년 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

❖ 소방공무원의 안전·건강·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심신 안정과 복지증진으로 시민 안전에 전념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 소방청 훈령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8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9조

II 추진방향

- 건강검진·상담·치료연계·진료지원 등 건강관리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소방공무원 심리적 회복탄력성 형성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인식 개선
-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확립·개선 및 순직·공상 지원
- 개인의 다양화된 복지욕구 실현을 통한 직원 복지수준 향상
- 휴양시설 확대 및 다양한 문화공연 지원으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정 의무사항 100% 이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PDCA(Plan-Do-Check- Action) 사이클 강화

Ⅲ

추진개요

비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한 소방환경 조성

목표

200% 만족을 실현하는 원스톱 소방 안전·복지 지원

추진

과제

심신건강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수건강진단 ②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③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④ 심리안정 전문 치유프로그램 운영 ⑤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대책 운영 ⑥ 한방의료서비스 시범운영 ⑦ 출동부서 공간치유사업 시범운영 	<p>확대</p> <p>확대</p> <p>확대</p> <p>확대</p> <p>확대</p> <p>신규</p>
후생복지 지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양시설 및 공연·문화 바우처 지원 ②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③ 전세자금·난임·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④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료 지원 ⑤ 직장어린이집 운영 ⑥ 우수공무원 문화탐방·부조급여 지원 ⑦ 현장 출동부서 구내식당 운영 개선 ⑧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p>확대</p> <p>확대</p> <p>신규</p> <p>신규</p>
현장안전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실행 ② 현장 안전관리 교육·훈련 활성화 ③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점검 ④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p>확대</p>
순직공상 지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영웅 길 명예도로명 부여 ②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추진 ③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강화 ④ 암·희귀질환 직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강화 	<p>신규</p> <p>신규</p> <p>확대</p>
중대재해 예 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성 평가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③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점검 ④ 중대산업재해 예방 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이행 ⑥ 안전보건교육 ⑦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⑧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p>확대</p>

IV

2024년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통계목		내 용	통계목별	2424년		
		계	29,402,088	29,402,088		
후 복 지	생 지 원	사무관리비	콘도회원권 이용료 지원	892,320	5,412,904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	306,680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3,718,000		
			소방공무원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95,904		
		공공운영비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60,000	60,000	
	포 상 금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43,260	143,260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100,000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	670,150	670,150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지급	939,360	939,360	
	시설비		직장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10,670	10,670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구입	400,000	400,000	
민간용자금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금 지원	4,000,000	4,000,000		
선 택 적 지 도 영	제 도 시 행 경 비	공공운영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지원	2,485,450	2,485,450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3,629,800	13,629,800	
정 건 관	신 강 리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PTSD 예방 등	40,320	712,820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566,000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운영		95,000
				심신안정실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매		11,500
	공공운영비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지원	170,000	200,000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의료비 지원 등	30,000		
자산취득비		추나베드 구매	5,000	5,000		
스 트 레 스 회 복 력 강 화	사무관리비	스트레스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134,000	134,000		
중 대 해	사무관리비		위험성평가	47,028	149,078	
			안전보건교육·훈련	22,900		
			안전보건조직운영(산업보건역)	7,200		
			작업환경측정	40,000		
			근로자 안전보건조치(건강진단 등)	13,350		
			안전보건활동 물품구매 및 홍보물 제작	18,600		
	공공운영비		위험성평가 개선비용	39,995	39,995	
시설비		유해위험요소 개선	360,601	360,601		
순 유 가 족 원	지 속 원	행사운영비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13,000	49,000	
		장학금 및 학자금	순직공무원 자녀 장학금	36,000		

□ 2023년도 주요성과

- (순직·중대재해 ZERO 달성) 상시근로자 안전사고 목표(6건) 100% 달성
* 2023년 상시근로자 안전사고 : 6건(골절 4, 열상 1, 염좌 1) / 2022년 8건
- (조례 제정(1)·개정(4)) 소방 안전 및 복지환경 개선 법적 기준 마련
- (내손안에 상담센터) 비대면 상담 SNS 앱 신설으로 상담방식 다양화
- (안심협력병원 2개소 추가지정) 지역안배 및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 (서울시한의사회 업무협약) 찾아가는 한의사·한방 심리치료 시범운영
-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 퇴직 예정자 및 신규임용자 추가 수혜
- (국립묘지 소급 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한 명예 회복
- (소방영웅길) 홍제동 순직소방공무원 6인에 대한 명예도로명 부여
- (식당운영 개선 TF 운영) 개선 방향 설정 및 향후 계획 수립
- (단체보험 보장 강화) 3대 중증질환 및 공상자 입원치료 간병비 등 보장
- (세종문화회관 업무협약 체결)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서비스 제공

□ 2024년도 개선사항

- (극단적 선택 ZERO 추진) 공상자·희귀질환자, 수사·징계 처분 대상자 등 심리적 불안 예상되는 심리지원 소외 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전직원 5년 주기별 정신과 진료 지원
- (희귀질환자 순직·공상 입증 지원) 당사자 및 가족 입증 부담 경감
- (공상자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부상 직원 및 가족 지원 방안 마련
- (안심협력병원 지속적 추가지정) 지역안배를 통한 전직원 혜택
-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저감 대책) 매년 10% 저감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문화공연 혜택 강화) 메이저 문화예술단체 MOU를 통한 혜택
- (순직 장례지원 매뉴얼 개발) 순직사고 발생 대비 장례 매뉴얼 마련

VI

분야별 세부계획

1

심신건강관리

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확대

각종 현장에서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을 체계적인 특수검진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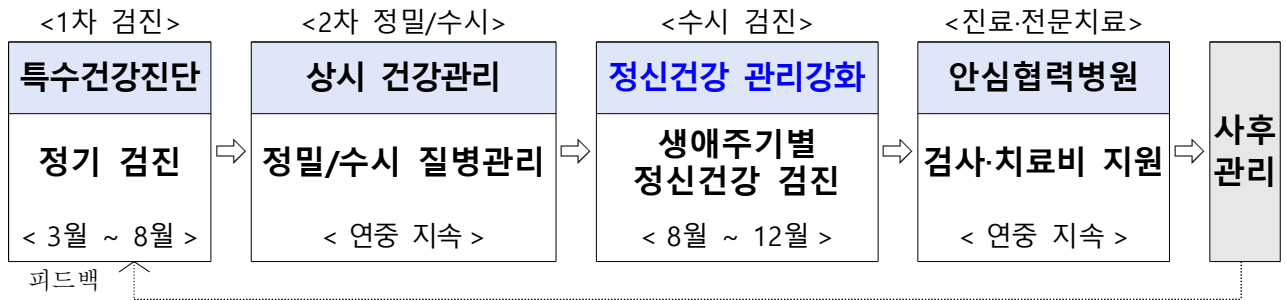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5장(건강건강진단)

□ 운영개요

검진	특수건강진단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정기	수시	정밀	
기간	'24년 3월 ~ 8월	연중실시	연중실시	8월 ~ 11월
대상	7,436명 (2024.1.1.기준)	대형화재 발생, 정신질환 위험시 등	검진 이상소견자	2,262명
예산	3,346,200천원 (1인 450천원)	297,440천원 (1인 40천원)	74,360천원 (1인 40천원)	610,740천원 (1인 270천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체결된 검진기관 중 직원들이 희망하는 곳 선택 검진 - 업무 중 건강장애 증상 및 유해인자 노출 우려시 수시건강진단 활성화 - 대사증후군(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정밀건강진단 활성화 			

- (정기진단) 소방활동업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 대해 매년 1회 실시
- (수시진단) 업무 중 유해인자노출로 건강장애가 의심되어 필요한 경우 실시
- (정밀진단) 직업성 증상 사후관리를 위해 검진 의사 판단에 따라 실시

□ **검진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업무 중 유해인자 노출 의심되는 경우 수시검사를 통한 질병관리
 - 출동대원 감염인자 및 근골격계, 정신질환 등 의심시, 검사·치료 지원
- 이상소견자 2차 정밀 검진을 통해 정확한 질환 확인
 - 분야별 정밀검진을 통한 진단, 직업성질환 연관성 확인 후 집중관리
 - 질병 악화우려 보직 변경, 휴가(병가) 등 조치
- 119안심협력병원 진료를 통한 개인 건강관리 참여 독려

□ **소방공무원 상시 건강관리 체계 도입**

- 대 상 : 유소견자, 만성질환자(대사증후군)
- 내 용 : 건강검진 유소견자 후속관리 지원
- 방 법 : 유소견자 등 검진 기관에서 상시 기본검사 활성화(분기별)
 - 분기별·반기별 건강검진센터 방문 ⇨ 기본검사 체크 ⇨ 비용 본부 일괄 지급
 - * 대사증후군 :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 이상소견 3가지 이상 시

□ **2024년 달라지는 점**

- (사후관리) 정기검진 후 질병 이상소견자 건강관리 및 병원치료 연계 확대
- (검진확대) 협약기관 활용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고위험군 관리
- (생애주기 정신건강 검진) 5년마다 주기적 정신건강 검진 추진

②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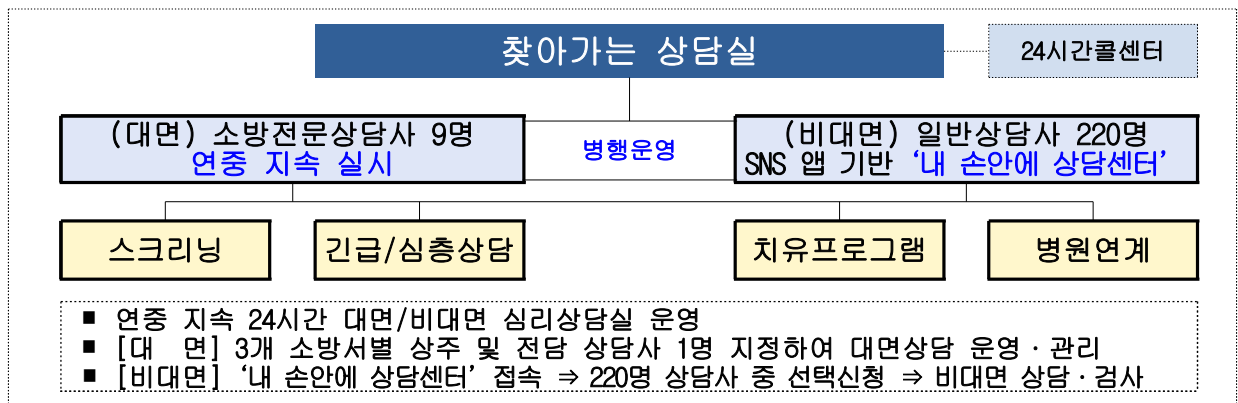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 형성 등을 위해 전문상담·교육으로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보건안전담당관-9997(2023.9.26.)호「20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지침」

□ 운영개요

- 대 상 : 본부 및 산하기관 쏠 소방공무원
- 기 간 : 2024. 1. 1. ~ 12. 31. / 연중 지속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사업예산 : 금565,680,180원(소방공무원 ^{566백만원(국비 233백만원)} 정신건강 관리 / 사무관리비)
- 인력구성 : 10명(전문의 1명, 상담사 9명) * 상담사 1명당 3개기관 담당
- 운영방법 : 대면 방문 상담 + 비대면 온라인 앱(어플) 상담



□ 2024년 달라지는 점

- (공백방지) 심리 상담공백 최소화를 위한 '24.1.1.부터 연중 운영
- (집중치유) 상담사 치유 필요대상 선별, 치유프로그램·병원 연계

재난현장 활동 중 부상과 질병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회복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서울특별시상 방침 제155호「119안심협력병원 지정·운영 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2024. 1. 1. ~ 12. 31. / 연중 지속
- 대 상 : 소방공무원 전 직원
- 사업내용 : 근무 중 발생 하는 부상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지정기관 : 총 9개소 * '24년 협력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예정

- (전문진료) 보라매, 서울의료원, 은평성모, 상계백, 이대서울,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
 - (화상전문) 한강성심병원(1·3권역), 베스티안서울병원(2·4권역)

- 사업예산 : 금200,000천원(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 공공운영비)
- 운영방법 : 병원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환급액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외래 의료비 본인부담금) = 협력병원 외래 진료·검사·치료비 - 실손의료보험 환급 금액

□ 2024년 달라지는 점

- (추가지정) 접근·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력병원 3개소 추가 지정운영
- (절차개선) 개인 선결제 및 실손의료보험 환급 신청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료확대) 한방치료 도입을 통한 동·서의학 협진 심신 건강관리 강화

구 분	2023년	2024년
예 산	316백만원	200백만원
지원한도	1일 40만원 한도	전년 동일(예산 조기 소진시 한도변경 가능)
지급절차	병원진료 선결제 ⇨ 환급신청	병원 선결제 ⇨ 실손보험청구 ⇨ 환급신청
지정병원	총 7개소	총 10개소(1개소 추가 지정 예정)

④

심리안정 전문 치유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고위험군과 심신안정 필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여 신체 및 정신적 회복탄력성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8조의3

□ 전문상담사와 함께하는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3. 3월 ~ 11월 / 9회차 운영
- 대상목적 :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발하여 직무 관련 정신적 고통 해소
- 내 용 :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사전, 사후)을 통한 효과성 검증

운영 방법	대면	• 트레킹, 요트세일링, ATV, 페러, 승마 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 요가테라피, 작은음악회, 허브힐링 등 심신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비대면	• 전문강사와 온라인(ZOOM)을 통한 자가체험 힐링 프로그램 • 스트레스 검사·관리교육, 명상, 체조(요가) 등 원격 체력증진,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 사업예산 : 금134,000천원(스트레스회복력 지원 / 사무관리비) * 국비 50%

□ 심리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

- 기 간 : 2023. 3월 ~ 11월
- 대상목적 : 소방업무 등으로 스트레스 가중된 직원 대상 심리회복
- 내 용 : 업무과중·교대근무에 의한 신체리듬 불균형회복·긴장완화
 - 소방기관별 자치구 힐링센터 활용 치유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진행
 - Art(미술, 음악, 공예) 활용 마음돌봄 및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문화행사 등
- 사업예산 : 금60,320천원(전문가 초빙 금40,320천원/가족캠프 금20,000천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 (맞춤지원) 전문상담사 힐링캠프 운영 관리 및 상담 치유 치료 연계 지원
- (확대제공) 힐링콘서트, 골목여행, 자치구 체험활동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⑤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 운영**확대**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위기 상황 대비 조직적인 관심과 공감으로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 보건안전담당관-12545(23.12.12.)호「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 강조」

□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5년^{19~23년}간 극단적 선택 직원 75명으로 증가 추세(자살 제외 순직자 49명(53.06%) ↑)
- (23년 기준) 전국 극단적 선택자 11명, 일부 구조적 문제점 도출
 - 근무연수 10년 이내 MZ세대 극단적 선택 집중(11명 중 5명)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추정, 신규전입자(입직 6개월 내) 극단적 선택 연속 발생

□ **운영개요**

- 기 간 : 2024. 1. 1. ~ 12. 31. / 연중 지속
- 대 상 : 소방공무원 전 직원
- 추진내용 : 조직적 관심과 공감으로 극단적 선택 극복방안 마련

- (조직문화 개선) 소방관서장과 MZ세대 직원 「만남」을 통한 가치공유
- (직장 관심확대) 「동료 생명지킴이」 지정·운영 및 「배려 관심갖기 운동」 확대
- (치유 체험활동) 서울식물원, 공원 등 자치구 힐링센터 활용 심리회복 지원
- (심리지원 강화)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위한 긴급심리위기 TF팀 강화

□ **2024년 달라지는 점**

- (관리 확대) 공상직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검사·치유 확대
- (전문가 참여) 전문가 참여 소방기관 간담회, 자살 예방교육 등 운영

⑥ 한방의료서비스 시범운영

확대

부상과 질병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회복·증진 지원을 위한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방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8조

□ 시범운영개요

- 기 간 : 2023. 9월 ~ 2024. 3월 / 약 6개월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내 용 : 근골격계 관리, 정신건강 관리, 화상 치료 등
- 사업예산 : 금100,000천원(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금95,000천원/추나베드 금5,000천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근골격계 치료·한방 심리치료·한방 화상치료 지원 >

- ① (근골격계 치료) 한의사 직접 방문 찾아가는 추나 치료 및 검진
 - 운영기관 : 마포·동대문·강서·강동 소방서(심신안정실 활용)
 - 방 법 : 주 1회 해당 소방서 한의사 직접 방문(검진 및 치료)

(23.12.31.기준 / 16주간)

현황 \ 기관	마 포	동대문	강 서	강 동
총 47회/393명	13회/97명	14회/96명	11회/112명	9회/88명

- ② (한방 심리치료) 지정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상담·진료 지원
 - 방 법 : 한의사회 지정 전문의 자격 한의사 소속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 13개소(한방병원 2, 종합병원 1, 한의원 10), 한의사 18명
- ③ (한방 화상치료) 한의사회 지정 한방 화상 전문 의료기관 치료 지원
 - 방 법 :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화상 피해 소방공무원 진료 지원
 - 의료기관 : 자연재생 한의원(강남구 소재)

□ 2024년 달라지는 점

- (확대운영) 시범운영 및 효과성 분석 후 근골격계 치료 확대 운영
- (추가지정) 양·한방 전문 협력병원 추가 지정을 통한 한방의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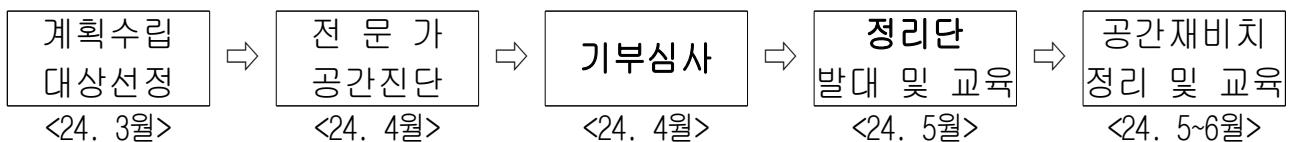
전문가를 통해 근무공간을 재구성 및 정리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환경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효율적 공간배치로 센터 내 생활공간 확보 및 심리적 안정과 치유
- 정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공간 효율성 제고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교육을 통해 효과적 화재피해 가정 복구 지원 및 실생활 공간 치유

□ 사업개요

- 기 간 : 2024. 3월 ~ 6월 / 4개월 간
- 대 상 : 8개 안전센터(권역별 2개소) / 자발적 신청 선정
- 예 산 : 의용소방대원 활동비 등
- 내 용
 - 사무실·대기실 등 출동 동선을 고려한 공간 효율성 진단 및 컨설팅
 - 전문가·의용소방대원 활용, 가구 재배치 및 정리·정돈 노하우 전수
 - 민·관 및 기업 공익사업간 연계를 통한 대시민 협력체계 마련 등
- 협력부서 : (주관) 안전지원과 (협조) 재난대응과·현장대응단
- 협조기관 : 외부 기부사업 재단 및 재능기부 기업 협력
- 진행절차



□ 향후계획

- 따듯한 재단 및 (주)공간치유와 역할 분담 등 업무 협의 진행
- 직원 및 참여 의용소방대원 등 효과성 분석 후 확대여부 판단

2 | 후생복지지원

① 휴양시설 및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소방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안정되고, 육아 보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조성하고자 함

□ 휴양시설 운영

- 기 간 : 2024. 1. 1. ~ 12. 31.
- 대 상 : 본부 산하 전 직원(일반직 포함) * 공무원, 공공안전관 제외
- 운 영 : 법인콘도·일반휴양시설·제휴휴양시설
- 지원금액 : 1박 최대 120천원 / 1인 연 최대 5박 이용
- 사업예산 : 금892,320천원(후생복지 지원 / 사무관리비)

□ 콘도회원권 구매

- 시기방법 : 2024.3월 / 등기제(소유지분) 또는 회원제(10~20년)
- 사업예산 : 금400,000천원 (후생복지 지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공연·문화바우처 운영

- 기간대상 : 2024. 2월 ~ 11월 /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
- 운영대상 : 영화관, 음원서비스, OTT, 교보문고 등
- 배정수량 : 1인 8매(1매 = 8천원) ※ 상·하반기 4매씩 배정
- 사업예산 : 금475,904천원(후생복지 지원 / 사무관리비)

□ 2024년 달라지는 점

- (지원확대) 공연·문화바우처 및 휴양시설 지원금 확대 지원

구분	2024년	2023년
문화바우처	475,904천원 (전년대비 173,296천원/57%↑)	302,608천원 (전년대비 120,424천원/40%↑)
휴양시설	1박당 120천원	1박당 100천원

②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들의 여가 및 취미 활동 지원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운영개요

- 지원대상 : 43개 동호회 3,733명
- 운영예산 : 금306,680천원(후생복지 지원 / 사무관리비)

* 2023. 12. 31. 기준

동호회명 회원(명)	배드민턴 (1권역)	배드민턴 (2권역)	광진레드 윙스(야구)	사이클	축구 (3권역)	파이어릿츠 (야구)	축구 (2권역)	구로불자비 (야구)	농구
3,733	236	191	191	185	173	130	122	118	112
	문화탐방	낚시	오토바이	당구	현장 응급처치	테니스	발명	배드민턴 (4권역)	주짓수
	110	104	100	98	93	91	90	88	84
	축구(1권역)	현장활동기자	족구	수난안전	두바퀴	드론	배드민턴 (3권역)	축구(4권역)	클라이밍
	82	82	81	80	79	79	76	70	66
	탁구 (1,3권역)	탁구 (2,4권역)	강남레드엔젤 (야구)	수영	캠핑	크로스핏	등산	양천레즈 (야구)	강동블레이즈 (야구)
	65	65	63	61	56	53	52	48	40
	강서파이어 (야구)	걷기	끼릭스 (야구)	생존연구	밴드	마술	Chat GPT		
	38	38	35	31	25	21	31		

○ 지원내용

- 정기지원 : 동호회별 상·하반기 기본활동비 2회 분할 지원 / 185,900천원
- 수시지원 : 행사지원비(자체행사·전국대회 참가 등) 지원 / 120,780천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 (지원확대)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필요물품 확대 지원
- (성과포상) 상·하반기 우수 동호회 선정하여 특별지원금 지급

③

무주택자 전세자금 · 난임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소방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세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기반을 향상하기 위함

□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 신청 : 2024. 2월 중
- 대상 : 무주택 소방공무원으로서 2024. 1. 1. ~ 12. 31. 기간 중 전·월세 계약자 또는 계약예정자 ※ 잔금지급일 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억원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예산 : 금4,000,000천원(후생복지 지원 / 민간융자금)

□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 운영시기 : 2024. 2. ~ 12월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및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인당 연3,000천원(약제비 포함)내
- 사업예산 : 금60,000천원(후생복지 지원 / 공공운영비)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 운영시기 : 2024. 7. ~ 10월 * 지급일 : 2024. 10월 중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 본인·가족 의료비 부담과중(2년간 500백만원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 최근 2년간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00천원
- 사업예산 : 금100,000천원(후생복지 지원 /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개인의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실현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대 상 : 7,507명(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
- 사업예산 : 금16,115,250천원(후생복지 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배 정 일 : 2024. 2. 8.(목) 예정 * 1인당 1,500P ~ 최대 1,900P

기본(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전 직원 1,500P 일률배정	근속 1년당 8포인트, 최고 200포인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200포인트

- 다자녀 출산 축하 지원포인트

2자녀	3자녀 이상	비 고
200만원	300만원	'18년부터 확대적용 50만(2자녀)/ 100만(3자녀)/ 200만(4자녀이상)

- 태아검진비용 지원포인트

임신한 소방공무원 또는 배우자	비 고
10만원	'23년부터 신규 적용

- 단체보장보험 * 보험사(7개) : KB손해보험, db 현대, 농협, 메리츠, 한화, 신한

구분	생명상해	실손(입원)	실손(통원)	선택담보	선택특화담보	
보장금액	3억	3천	3천/15만	2천~3천	7만~1억	
보험료	남	328,846	124,140	51,830	130,657	10,660
	여	193,310	131,490	35,750	138,120	5,350

□ 2024년 달라지는 점

- (단체보험 선택담보 범위 확대) 암·급성심근경색·뇌졸중 선택담보 및 공무상 입원·장해진단·장기요양직권면직 선택특화담보 신설

⑤ 직장어린이집 운영

소방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안정되고, 육아 보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4. 1. 1. ~ 12. 31.
- 위탁기관 : 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위탁기간 : 23.1.1. ~ 25.12.31.
- 사업예산 : 금986,793천원(후생복지지원 / 민간위탁금) (단위:천원)

구 분		소방학교	용산소방서	합 계
총 운영예산		514,447	472,346	986,793
소방재난본부	운영비지원	323,535	337,813	661,348
지원예산	시설비	10,670	0	10,670
정부지원료 등		180,242	134,533	314,775

○ 직장어린이집 현황

구분	사진	위치	규모	정원	현원	직원
소방학교 (신축)		은평 통일로 1031-21	2/0층 240㎡	30명	19명	원 장 1 교 사 5 조리사 1
용산소방서 (개축)		용산 한강로 167	2/0층 241㎡	18명	16명	원 장 1 교 사 5 조리사 1

□ 2024년 달라지는 점

- (운영확대) 용산 어린이집 0세반 운영 및 원아 지속 추가 모집 추진
- (시설개선) 소방학교 어린이집 옥상 누수 공사

⑥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부조급여 지원

우수 소방공무원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을 지원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 지원

□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운영

- 운영시기 : 2024. 4월 중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 대상인원 : 56명(소방공무원 및 배우자)
 - 우선순위 : 퇴직예정자 > 격무부서 및 업무유공자 > 기타 공적이 있는 자
 - 기관배정 : 소방서(25), 방재센터(1), 특구단(1), 소방학교·경호처·체험관(1)
- 내 용 : 문화유적지 시찰 등
- 사업예산 : 금43,260천원(후생복지 지원 / 포상금)

□ 부조급여 운영

- 운영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 청구시효 : 재난발생일 및 사망일로부터 3년
- 사업예산 : 금939,360천원(후생복지지원 / 연금지급금)
- 지급기준

구 분	지급 대상	지급액
재난부조금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때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3 ~ 3.9배까지 지급
사망조위금	공무원(본인) 사망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0.65배

현장 출동부서 24시간 직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여 대 시민 소방 서비스 향상 집중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2조 4호 과목
- 「본부장 일선관서 초도방문 건의사항 정책실행 추진 결과」 (23. 6. 5)
- 「현장 출동부서 식당운영 개선 TF팀 추진계획」 (23. 8. 7)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위반 시 법적 분쟁 및 민원 발생 야기
- 본부 차원 식자재 일괄 구매 및 출동대원 업무부담 감소 방안 마련
- 안전센터 휴일 미운영 등 애로사항 해소 및 현장활동 업무 전념 환경 조성

□ 2024년 추진과제

과 제	주요내용	시기
① 한국 공인노무사회 MOU 체결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적분쟁 자문	3월
② 근로기준법 관련서류 통일화	• 표준근로계약서, 4대보험 적용, 퇴직금 방식, 급여명세서발급 등	3월
③ 구내식당 운영방식 정비	• 식당운영회 비법인사단 의무화 • 119안전센터 식당운영회 설립 • 구내식당 운영규정 정비·규격화	3월
④ 급식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소방관서 급식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5월
⑤ 식자재 일괄구매 계약 시범운영	• 식자재 기업 가격협상 및 계약 등	7월

□ 장기과제

- (본서) 본부 식자재 일괄구매 방안 추진 (안전센터) 영양사 식단·식자재 납품
- 민간업체 근로자 위탁 운영 예산 마련 방안 강구 및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성·운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12조

□ **운영개요**

- 목 적 : 보건안전,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심의·검토
- 구 성 : 12명(위원장 포함) * 위촉식 : 23. 12.26.(화) 기사행
- 위원임기 : 2년 ※ 1회 연장 가능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비 고
위원장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윤○○(남)	소방준감
위 원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이○○(남)	소방령
위 원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남)	소방령
위 원	종합방재센터	상황총괄팀장	박○○(여)	소방령
위 원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여)	소방령
위 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대외협력국장	변○○(남)	공무원단체
위 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서울위원장	손○○(남)	공무원단체
위 원	전국소방직장협의회	송파소방서 직장협의회장	유○○(남)	공무원단체
위 원	서울시재향소방동우회	사무국장	유○○(남)	일반
위 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여)	일반
위 원	리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여)	일반
위 원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교수	윤○○(여)	정신과 전문의

○ **심의사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 소방공무원 심신안전을 위한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3 | 현장안전관리

① |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실행

소방공무원 현장소방활동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개선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구 성		담당직무
상설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	
비상설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2023년 일선 소방관서 안전관리 계획」 참조
	현장안전담당	

□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실행 내실화

- 본부 추진사항 및 소방관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 현장안전점검관(팀장)의 지휘활동시 안전관리 내용 포함
 - 위험성평가, 통신, 대원통제 및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등
- 현장안전점검관(팀장)의 겸임금지 및 현장안전담당 역량강화
-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부서·개인 서장 표창 이상 실행

□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

-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1건당 사고방지 대책* 3건 발굴
- 사고조사팀 운영·준사고·아차사고·개선대책·위험성평가·교육자료 배포
 - 안전사고 저감 정책 발굴 및 시행 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 2024년 달라지는 점

- (의무사항) 소방관서의 장이 매년“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정책발굴) 안전사고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정책 발굴 기록 관리

②

현장 안전관리 교육 · 훈련 활성화

확대

소방관서장 등이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및 전직원 일상교육 확행

□ **소방학교 신입자 · 사이버 교육 외 현장 안전관리 교육 확행**

구 분	대 상	교 관	시 기	관 리
일상교육	당일 출동대원	센터장 · 팀장	근무교대 현장활동 복귀시	근무일지 기재
정기교육	전 직원	서장(단장), 센터장(현장안전담당)	월 1회 이상	계획 및 결과보고
특별교육	신규 · 전입, 직무 변경 직원	서장(유형별 부서장)	임용 · 전입 · 직무 변경시	계획 및 결과보고

-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SOP, SSG 포함)
-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등
- 현장안전점검관 중심에서 현장안전담당 사이버교육 및 전문교육 확행

□ **소방관서별 훈련 ·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이에 준하는 훈련,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등 추락위험·수난사고등이 발생 우려되는 훈련계획 수립 시 시행

□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 작성 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작성시기
생활안전활동 시 작성	소방활동 및 훈련시 작성	수시

□ **2024년 달라지는 점**

- (대상확대) 현장안전점검관 중심에서 현장안전담당까지 교육 확대
- (교관확대) 전직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정기교육 교관 확대
- (변 경)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 ⇨ ‘현장안전판단 훈련기록일지’로 변경

③

계절별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점검

여름 및 겨울철 등 계절별 주요 소방활동의 유형별 안전관리 사항 전파, 안전관리 특별점검 기간운영 및 본부 관련 부서 합동특별점검 추진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훈련 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제1항 및 제2항, 제29조(실태점검)제4항

□ 운영개요

- 목 적 :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
- 시 기 : 소방청 지시 또는 일정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 필요 시
- 점검방법 : (본부) 합동점검(권역별 지정) / (소방서) 자체 점검

□ 주요내용

- 본부·소방관서 안전관리 기본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
- 폭염,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풍수해), 수난구조, 벌집제거 활동 중 안전·보건 관리 준수여부
- 폭염·한파 등 대비 물품(회복차량 등 포함), 풍수해 관련 장비, 수난구조(수상, 급류, 수중) 유형별 안전장비, 벌집제거 활동 안전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 SOP, SSG 및 관련 현장활동 지침 등 숙달 교육 및 사고사례 교육실태·안전관리 관련 기록관리
- 여름 및 겨울철 등 계절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의 목소리·의견 청취 등

□ 2024년 달라지는 점

- (결과보고) 소방관서 자체 점검 및 본부 합동점검 결과보고 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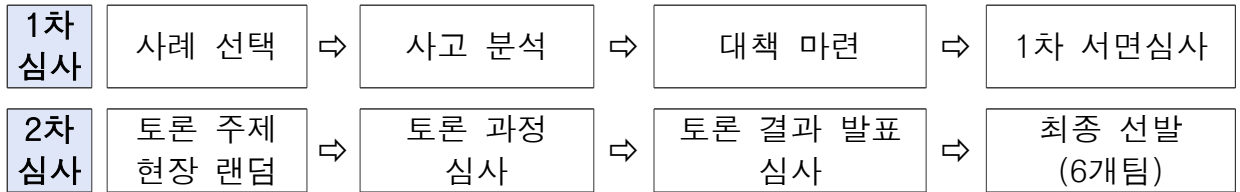
④ 제2회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활동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24. 10월 ~ 11월
- 대 상 : 25개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공무원 팀 단위
- 팀 구 성 : 현장 활동 직원 누구나 (리더포함 5명이 1개팀)
- 주 제 : 최근 3년간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 제출방법 : 소방관서별(1개팀 이상) 심사 없이 모두 제출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10개팀) ⇨ (2차) 토론 발표 심사(6개 팀)



○ (1차) 심사 항목 및 기준

합 계	배 점				
50점	사례난이도	상황분석력	우수에방대책	구체적 방지대책	기대효과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 (2차) 심사 항목 및 기준 : 라운드테이블 방식 토론(30분) ⇨ 발표(10분)

합 계	배 점				
50점	아이디어 수	진행력	실용성·효과성	문제해결능력	발표력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 시 상 : 최우수 1개 팀, 우수 2개 팀, 장려 3개 팀, 특별상 4개 팀

- 시 상 금 : 최우수(200천원), 우수상(150천원), 장려상(100천원), 특별상

4 순직공상 지원

① 소방영웅 길 명예도로명 부여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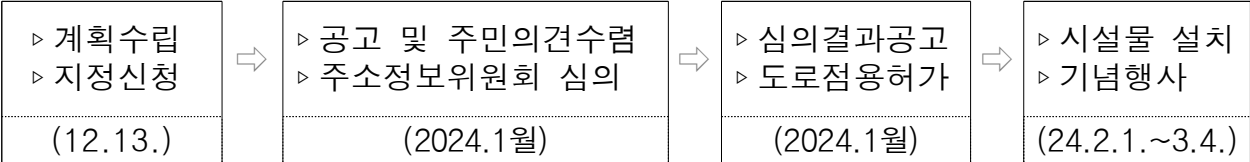
2001.3.4.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화재 인명구조 중 순직한 소방관 6인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진작 방안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순직 소방관 6인 명예도로명 부여 제안(23.10.16. 서울시 국정감사, 오영환의원)

□ 추진개요

- 도로명 : 소방영웅길(Sobangyeongung-gil)
- 지정기간 : 24. 3. 4.(월) ~ 29. 3. 3.(토) / 5년
- 지정구간 : 홍제역 3번 출구 ~ 고은초등학교 앞
- 사업예산 : 도로명판 비용(서대문구청), 시설물 및 행사비(예산부서 협의)
- 추진절차



□ 기념행사(안)

- 일 시 : 2024. 3. 9.(토) 14:00 ~ 15:30 예정
- 장 소 : 고은초등학교 운동장(서대문구 모래내로 441)
- 참석인원 : 200명(서울시장·소방청장·서울소방본부장·국회의원 등)

- 주요내용 : 기념식, 사진전 및 추모영상, 추모부스 운영 등

②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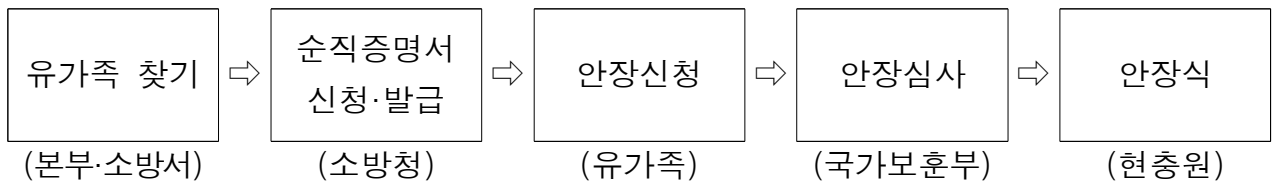
신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 소급안장 추진 및 추모문화 조성과 예우 지원을 하기 위함임

□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식 등 추모사업 추진

- (추진배경)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른 '94. 9. 1. 이전 순직소방관 적극 발굴 및 국립묘지 소급안장 추진으로 예우·추모문화 조성
 - * 2023년 안장식 추진 결과 : 3위 현충원 안장(대전 2, 서울 1)

- (안장대상) 위험직무 순직 소방공무원 중 **현충원 미안장 2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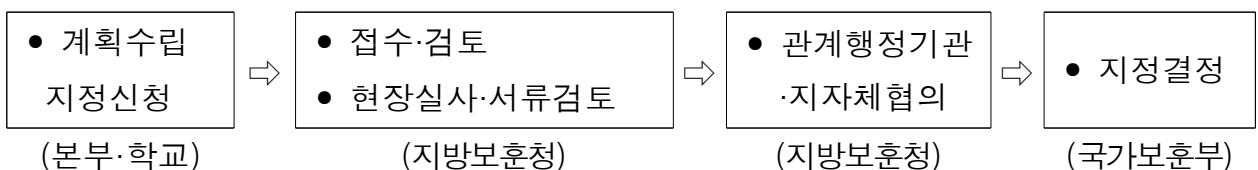


- (사업예산) 금13,000천원(순직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행사운영비)

구 분	세 부 내 역	
안장식	• 순직소방공무원 안장식 지원	5백만원
총흔탑 참배 등	• 신년·현충일·소방의날 등 참배 지원 • 흥제동 화재, 광진 수난구조대원 추모식 지원	8백만원

□ 소방학교 총흔탑 국가 현충시설 지정 추진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부터 4
- (지정혜택) 관리자 지정, 지방보훈청 개보수 지원, 기념식, 체험학습 등 시설활용



③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강화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원 및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위로를 하고자 함

□ 순직 유가족 위로금 지원

- 대 상 :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가족
- 사업예산 : 금40,000천원(순직 1인 / 위로금 20,0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내 市 인력개발과로 청구

□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 대 상 : 위험직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자녀
- 지원시기 : 연 2회 분할 지급
- 지원금액 : 초 1,000천원, 중·고 2,000천원, 대학생 4,000천원
- 사업예산 : 금36,000천원(순직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 장학금)

□ 공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대 상 : 소방활동(소방활동외 제외)으로 질병 및 부상을 입어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급시기 : 연4회(분기별 1회)
- 사업예산 : 금59,478천원(기본경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공상 소방공무원 본인 치료비 및 자녀 학자금 지원

- 2023년 에쓰-오일 등 20개 민간단체 총 106명(177,629천원) 지원
- 기타 마음돌봄 지원, 자녀 힐링캠프, 첨단보조기구 등 지원 20명

□ 향후계획

- (보상강화) 업무상 부상(질병)을 입은 직원의 치료비등 지원 확대 추진
- (조례규칙제정) 서울시 순직·공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순직 소방공무원 업무처리를 위한 장례지원 편람 제작·배포 추진

④

암·희귀질환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입증지원 강화

소방업무 특성상 암·희귀질환으로 투병·사망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당사자와 유족의 정신·경제적·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 지원하기 위함

□ 추진배경

- 소방업무 특성상 암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 또는 사망 사례 빈번
 - * 서울 희귀질환 투병중인 직원 : 98명(폐암 등 암질환 79명, 희귀질환 19명)
- 공무상 인과관계는 당사자·유족이 입증 부담, 정신·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 ⇨ **전문가의 역학보고서 필요**

□ 지원 개요

- 대 상 : 암 및 희귀질병으로 투병 또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 지원내용 : 역학조사 및 표본설계, 실사관리계획, 조사결과분석 및 순직·공상 검증방법, 입증지원 과정·절차 등 지원
- 사업재원 : 대한소방공제회 예산 1억원 활용
- 수행기관 : 소방청 &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직업환경의학과)

< 서울소방재난본부 공상입증 지원 신청 및 결과(2019~2023년) >

▷ 지원인원 : 13명

* 혈소판증가증, 폐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위암, 황색인대골화증, 피부암, 비호지킨림프종(2명),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전립선암(3명), 골수외 형질세포종

신청 인원	역학조사 결과 업무연관성 유무			공상 신청결과		
	매우 높음	높음	가능성있음	승인	불승인	신청포기
13(명)	5	5	3	9	2	2

* 암, 희귀질환 투병 소방공무원 본인 치료비 지원 현황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인 원(명)	26	11	2	2	9	2
금 액(천원)	1109,950	44,500	10,000	4,450	47,000	4,000

□ 향후계획

- (입증·치료 지원 강화) 희귀질환 투병 직원에 대한 적극 지원·관리 등

5 | 증대재해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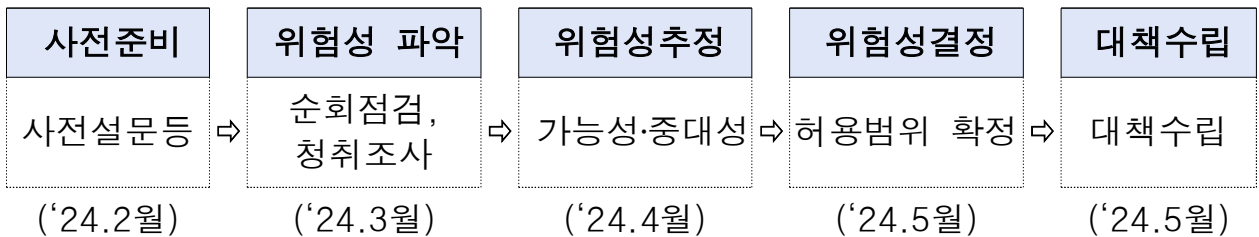
①

위험성 평가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기관 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함

□ 평가개요

- 기 간 : 2024. 2월 ~ 5월 *연1회 실시(상반기 예정)
- 대 상 : 30개 소방기관 및 38개 도급·용역·위탁사업
-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 사업예산 : 금47,027,736천원(증대재해없는 안전환경조성 / 사무관리비)
- 일 정



< 2023년도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계획 >

- ▶ 기 간 : 2023. 6. 7.(수) ~ 7. 26.(수)
- ▶ 대 상 : 소방기관 30개소(센터 포함) 399명, 도급·용역·위탁 32개업체 245명
- ▶ 결 과 : 유해위험요인 583건 발굴 중 136건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 ▶ 조 치 : 2024년 상반기 중 136건에 대한 조치이행 예정
- ▶ 예산반영 : 금400,596천원(공공운영비 금39,995천원, 시설비 금360,601천원)

□ 2024년 달라지는 점

- (근로자 참여 확대) 사전설문 조사 + 위험성 평가 임회
- (조기시행) 위험성평가 후 개선계획 수립 시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3월부터 위험성 평가 조기시행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운영개요

- 기 간 : 2024. 1월 ~ 12월
- 대상사업 : 41개 각 소방기관 도급·용역·위탁 사업 (2023. 12월 기준)

합계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소방서
41	4	1	1	1	34

- 보호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내 용 :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 >

-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③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④ 작업장 순회점검
-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 ⑧ 위험성평가
- ⑨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 ⑩ 작업환경측정
- ⑪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⑫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2024년 달라지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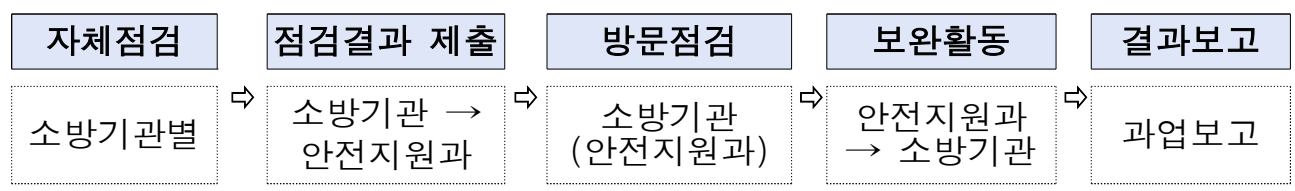
- (절차보완) 도급·용역·위탁 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 반영 명확화
 - 산출기초 조사서에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비를 명시
 - 대금 지급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확인 등

③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이행점검 의무에 따라 소방기관(30개소)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시 기 : 반기 1회
- 대 상 : 소방기관 30개소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
- 점검절차 : ① 소방기관 자체점검 + ② 업무담당자 현장점검



□ 점검사항

구 분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⑩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 조 치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⑭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 2024년 달라지는 점

- (市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활용) 소방기관 자체 점검 후 시스템 등록
- (담당자 교육 市 협조) 시스템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 등

④ 중대산업재해 예방 조치

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2024년 산업재해 목표 및 그 간 발생현황** (재해율: %)

구분	2024년 목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재해율	건수	재해율	목표	건수	재해율	건수	재해율	건수	재해율
계	4건	1.00	6건	1.49	6건	8건	1.92	1건	0.26	1건	0.26

□ 법령의 주요내용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정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유지

- 산업재해 발생 ⇨ 사고 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 ⇨ 사고 즉시 유선보고, 지체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자료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향후계획

- (산업재해 전략목표 4건 이하) 전년대비 2건 감소(33%) 대책 추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년 경과 ⇨ 종사자 안전 의식 변화 기대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 유해·위험요소 감소 대책 추진

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확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운영개요**

- 기 간 : 2024. 1월 ~ 12월 * 안전계획 수립('24.1월)
- 목 표 : 안전보건확보 의무 100% 준수 및 중대시민재해 Zero
- 대 상 : 30개소(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체험관(2), 소방서(25))
- 주요내용 :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중대시민재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

구 분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1	안전인력 확보	안전인력 및 장비 확보
2	예산편성·집행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4	안전계획 수립·수행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5	재해예방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및 개선 (절차)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조치(절차) 비상대피훈련
6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7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개선·시정사항	이행
8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조치	관계 법령상 법정교육 이수
9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재해능력 평가기준 등 마련	수급인 안전관리 능력 평가기준 마련 수급인 안전관리 능력 평가 안전관리 비용 기준 마련 안전관리 비용 편성·집행

□ **2024년 달라지는 점**

- (절차개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절차 보완
-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시 시기·방법 등 일원화하여 수준 상향
- (위탁점검) 시민이용 빈도 높은 시설은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⑥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교육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교육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운영개요**

○ 대 상 : 450명

* 현업업무종사자 386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0명, 관리감독자 32명, 안전·보건관리자 2명

○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중대산업재해	현업업무종사자	정기교육	현업업무종사자 매반기 12시간	인터넷원격, 집체 중 선택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현업업무종사자 배치 전 8시간	인터넷원격
		특별교육	현업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16시간 (단기·간헐작 업 2시간)	인터넷원격+집 체 혼합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인터넷원격 + 집체 혼합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신규 선임된 관리감독자 배치 전 2시간	인터넷원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책 임 자 (신규·보수) 6시간	비대면실시간, 집체 중 선택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집체	
중대시민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승강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실무) 교육 • 기계·전기·보일러 분야 법정 교육 등 			

○ 사업예산 : 금22,900,000원(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사무관리비)

□ **2024년 달라지는 점**

○ (관리강화)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 대상자 확대

○ 소방청사 시설물 담당자(공무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정교육 확대 실시 및 수료여부 추적 관찰

⑦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현업업무종사자 일반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운영개요

- 기 간 : 2024. 1월 ~ 12월
 - (일반건강진단) 2024. 5월 / (특수건강진단) 2024. 5~6월
 - (사후관리) 매월 1회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 자문활동

○ 건강진단 종류·대상·인원

* 2024.1월 기준 인원현황

구 분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목적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원	386명	107명	대상자 발생시 (ex. 구급대체인력 등)

- 사업예산 : 금10,950,000원(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사무관리비)

□ 2024년 달라지는 점

- (관리강화) 기타직(조리종사자)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관리 강화
- 조리종사자 일반건강진단 누락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수검 여부 확인 강화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건강상담(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추적검사 독려 등) 시행
- (수검여부 확인 변경) (기존) 각 기관별 → (변경) 본부 안전지원과

⑧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내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운영개요

- 기 간 : (상반기) 2024. 1~4월 / (하반기) 2024. 7~10월
- 목 적 : 유해인자 노출수준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 대 상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노출 공정
 - (유해화학물질) 조리·청소미화·시설정비·조경 업무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 방 법
 - (작업환경측정)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 용역
 -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품의 MSDS 토대로 유해성 조사(보건관리자)
 - * 유해제품 발견 시 사용중지 및 대체품 선정
- 사업예산 : 금40,000천원(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 사무관리비)

□ 2024년 달라지는 점

- (관리강화) 사용 화학물질(사용물질·제품) : 페인트, 실리콘, 접착제, 용접봉, 세제류 등)에 대한 유해성조사 및 작업장 관리
- (법정의무사항 이행 강화) 유해성 조사에 따라 사용여부 결정, 대체물질 선정, 안전한 작업수칙 및 법정의무사항 등 이행

VII

추진일정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심신건강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계획수립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연령대별 정신건강검진	결과보고		
	②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계획수립	찾아가는 상담실 연중 지속 운영							결과보고			
	③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수립	119안심협력병원 연중 지속 운영							결과보고			
	④ 심리안정 전문 치유프로그램	계획수립	스트레스회복력 / 심리안정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							결과보고			
	⑤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	계획수립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 시행							결과보고			
	⑥ 한방의료서비스 시범운영	4개 소방서 추나치료 시범운영		찾아가는 추나 등 한방의료서비스 확대 운영							결과보고		
	⑦ 출동부서 공간치유 시범운영	계획수립	권역별 출동부서 공간치유사업 시범 운영							결과보고			
후생복지지원	① 휴양시설 및 공연·문화 바우처	계획수립	화원권 구매	연중 운영					집행점검	바우처권도매	결과보고		
	②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수립	활동비 지원	연중 운영			활동비 지원	연중 운영		우수동호회 포상	결과보고		
	③ 전세자금·난임·생활 어려운 직원	계획수립	연중 운영				생활지원 대상 선발	연중 운영		결과보고			
	④ 선택적 복지제도 및 단체보장보험	계획수립	연중 운영							25년 계약	결과보고		
	⑤ 직장어린이집 운영	계획수립	연중 운영			지도점검	연중 운영			지도점검	결과보고		
	⑥ 우수공무원 문화유적 탐방부조급여	계획수립	탐방(제주도)	부조급여 연중 운영					결과보고				
	⑦ 현장 출동부서 구내식당 운영 개선		노무사회 MOU					조례제정	결과보고				
	⑧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회 운영						상반기 심의회	결과보고		하반기 심의회	결과보고		
현장안전관리	① 현장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실행	계획수립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연중 지속 운영							결과보고			
	② 현장안전관리 교육·훈련 활성화	계획수립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교육·훈련 연중 지속 운영							결과보고			
	③ 현장안전관리 실태조사·점검					계획수립	안전관리 조사·점검 연중 지속		결과보고				
	④ 현장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계획수립	대회진행		결과보고		
순직공상지원	① 명예도로명 부여 추진	계획수립	행사추진	결과보고		명예도로명 안내표지 등 유지 관리							
	②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계획수립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연중 지속 운영							결과보고			
	③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계획수립	조례 시행규칙 제정	순직 공상 지원 연중 지속 운영							결과보고		
	④ 암·희귀질환 소방공무원 지원	계획수립	암·희귀질환 지원 연중 지속 운영							결과보고			
중대재해예방	①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발주계약	위험성평가 실시(위탁)	위험성평가 개선계획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매뉴얼보강	계획수립	협업체운용 1분기보고	협업체운용	2분기보고	협업체운용	3분기보고	협업체운용	결과보고			
	③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점검	'23년 점검결과 미흡·보안		계획수립	상반기결과	'24년 기관별 점검결과 미흡·보안		계획수립	하반기결과				
	④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유지(수시)							결과보고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계획수립	안전점검 등 법정의무사항 이행			이행점검	안전점검 등 법정의무사항 이행		이행점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			
	⑦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 관리			계획수립	건강진단 실시	유소견자 사후관리				결과보고			
	⑧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물질 관리	유해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분기보고					유해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분기보고		

붙임 2023년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 및 후생복지 운영 결과보고 1부. 끝.